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5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차 (2020-05-08)

P34 내용수정

*(기존)

고용유지 지원금	지원금액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개편, 휴업, 휴직 등 으로 단축된 근 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	100분의50 미만인 경우	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$\frac{2}{3}$ (대규모기업 $\frac{1}{2}$)	단,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$\frac{3}{4}$ (대규모기업 $\frac{2}{3}$)
			100분의 50 이상인 경우	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$\frac{2}{3}$	

*(수정)

고용유지 지원금	지원금액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개편, 휴업, 휴직 등 으로 단축된 근 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	100분의50 미만인 경우	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$\frac{2}{3}$ (대규모기업 $\frac{1}{2}$)	단,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년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 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 의 $\frac{3}{4}$ 이상 $\frac{9}{10}$ 이하로서 고시비율 (대규모기업 $\frac{2}{3}$)에 해당하는 금 액
			100분의 50 이상인 경우	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$\frac{2}{3}$	

P49 내용수정

*(기존)

훈련연장급여	지급요건 (규칙§94)	+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
		+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		+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
		+ 실업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

*(수정)

훈련연장급여	지급요건 (규칙§94)	+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
		+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		+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
		+ 실업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(심층상담or집단상담에 한정)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

P85 내용수정

*(기존)

유족보상 연금 노 ^⑰	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노 ^{⑪⑮}	사망
		재혼(배우자만 해당, 사실혼 포함)
		친족관계 종료
		25세가 된 때(자녀)
		19세가 된 때(손자녀, 형제자매)
	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
		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 상실 + 외국 거주 or 출국for외국거주
		국민 아닌 수급자격자가 출국 for 외국거주

*(수정)

유족보상 연금 노 ^⑰	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노 ^{⑪⑮}	사망
		재혼(배우자만 해당, 사실혼 포함)
		친족관계 종료
		25세가 된 때(자녀)
		19세가 된 때(손자녀, 형제자매)
		장애인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던 자가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
		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 상실 + 외국 거주 or 출국for외국거주
		국민 아닌 수급자격자가 출국 for 외국거주

P94 내용수정

*(기존)

심사기간 및 결정	심의제외 (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) 노⑩	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가 결정된 경우	
		진폐	
		이황화탄소 중독	
		각하결정사유 해당	심사청구기간 도과
			법령방식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
		보정명령 받았음에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	
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			
그밖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결정등이 적법한지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			

*(수정)

심사기간 및 결정	심의제외 (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) 노⑩	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가 결정된 경우	
		진폐	
		이황화탄소 중독	
		각하결정사유 해당	심사청구기간 도과
			법령방식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
		보정명령 받았음에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	
그밖에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결정등이 적법한지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			

P254 16번 문제, **P264** 31번 문제, **P272** 46번 문제, **P274** 50번 문제 해설수정

*(기존)

구분		피보험기간(적용사업에 고용된 기간)				
	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이직일 현재연령	50세 미만	120	150	180	210	240
	50세 이상 및 장애인	90	180	210	240	270

*(수정)

구분		피보험기간(적용사업에 고용된 기간)				
	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이직일 현재연령	50세 미만	120	150	180	210	240
	50세 이상 및 장애인	120	180	210	240	270

P285 35번 문제 내용수정

*(기존)

035 보험가입자로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해당한다.

*(수정)

035 보험가입자로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해당한다.

P302 190⑤ 문제수정

*(기존)

- ⑤ 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()

*(수정)

- ⑤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 ()

P350 69번 문제 해설수정

*(기존)

- 69
- ① 3일 -> 7일(산재법 §40③)
 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-> 근로복지공단(산재법 §11, §57①)
 - ④ 정지한다 -> 정지하지 않는다.(산재법 §60①)
 - ⑤ 간병을 실시한 자 -> 간병을 받는 자(산재법 §61①)

*(수정)

- 69
- ① 7일 -> 3일(산재법 §40③)
 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-> 근로복지공단(산재법 §11, §57①)
 - ④ 정지한다 -> 정지하지 않는다.(산재법 §60①)
 - ⑤ 간병을 실시한 자 -> 간병을 받는 자(산재법 §61①)

P354 32⑤문제 해설·정답수정

*(기존)

- 032-⑤ (×)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및 「별정우체국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.
- 정답 >> 032-①(○), 032-②(○), 032-③(○), 032-④(×), 032-⑤(○), 032-⑥(×), 033(○), 034(○), 035(○), 036(×), 037(×), 038(×), 039(○), 040(○), 041(×)

*(수정)

- 032-⑤ (○)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및 「별정우체국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,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.
- 정답 >> 032-①(○), 032-②(○), 032-③(○), 032-④(×), 032-⑤(○), 032-⑥(×), 033(○), 034(○), 035(○), 036(×), 037(×), 038(×), 039(○), 040(○), 041(×)

P354 33번 문제 내용수정

*(기존)

- 033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 ()

*(수정)

- 033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 ()